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의 직임과 인사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he Positions and Personnel of the Naeui System in the Late Joseon Dynasty

PARK Hun-pyeong

Dept. of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positions and personnel of the Naeui system in the late Joseon Dynasty. First, the regulations of the Naeui system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literature related to Naeuiwon. Next, the operation of the regulations, changes in the system, and causes were analyzed through the Seungjeongwon Diary (承政院日記). We discovered: 1) Naeuiwon's medical bureaucracy originally did not have a fixed number of positions, but gradually came into being with a quota regulation. Uiyagdongcham-ui (議藥同參醫) and Naechim-ui (內鍼醫) did not have a quota, but was initially set at 10 people, then expanded to 12 people. Originally, the royal physician had no fixed number, and in 1864 the first quota was 7 people. 2) 'Gyeom-eoui' and 'gachanaeui' served to expand Naeui's quota. After the mid-17th century, 'Gyeom-eoui' expanded the quota of royal physicians to secure a position for the medical bureaucracy of Naeuiwon. 'Gachanae' after King Jeongjo serves to add to the quota while obeying the provisions of the law. 3) The customary promotion of Naeuiwon's medical bureaucracy expanded and became stricter after the mid-19th century, during which special promotions became more frequent than in previous periods. As for the provision of appointment to the 6th class after 30 months, Uiyagdongcham-ui was established in 1686 and Naechim-ui was established in 1718, increasing the chance for customary promotion. In the case of Naeui, the regulation for the Secretary General to raise the degree of official rank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Cheoljong era. However, special promotions were frequent in the mid-19th century because the number of high-ranking officers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In conclusion, the Naeui system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ang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ir own privileges. The Naeuiwon's quota was increased and promotion was guaranteed through the system and customs. Since the mid-18th century, there have been some regulatory restrictions, but the framework has not changed. This is confirmed not only in the regulations of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Naeuiwon, but also in the Seungjeongwon Diary. Naeuiwon's medical bureaucracy enjoyed superiority in promotion and status compared to other forms of technical bureaucracy.

Key words : Naeuiwon, Uiyagdongcham-ui, Naechim-ui, Gyeom-eoui, royal physician, Gachanaeui

I. 서론

내의원은 왕실에서 소용되는 약을 맡아 조제하는 관청으로 내의원 내에는 문신들이 겸하는 도제조·제조·부제조의

겸관 외에 여러 의관들이 소속되었다. 조선후기 내의원은 본청인 내의청과 침의청(1651년)¹⁾, 의약동참청(1673년)이 만들어지면서 三廳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 내의원의 기능과 관제 등에 대해서는 『經國大典』 등 법전을 바탕으로 기초적 연구가 행해졌다.²⁾ 이후 1810년 경 저술된 내의원 관청지인 『內醫院式例』를 활용하여 내의원 규정에 대한 더욱 상세한 논의가 진행되었다.³⁾

접수 ▶ 2022년 03월 07일 수정 ▶ 2022년 05월 12일 채택 ▶ 2022년 05월 13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120-9 대정4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el : 061-330-3525 E-mail : lillipute@dsu.ac.kr

- 1) 본고는 내의원 의관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 '침의'는 내침의를 지칭한다. 내의원 관련 문헌에서는 내침의를 보통 침의로만 지칭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침의와 내침의란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원래 '침의'란 직임 자체는 내의원 외에도 치종청과 해민서, 軍門 등에도 배속되었다.
- 2) 김두중과 손홍렬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66:196-199, 234-235. 손홍렬,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서울:수서원, 1988:263-266.
- 3) 이규근, 「조선시대 의료기구와 의관」, 동방학지, 1999:104:104-121. 박훈평, 「내의원식례의 저술 시기와 내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5; 8(1):39-51.

최근 내의원의 기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⁴⁾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는 법전 규정의 시대적 변천을 살피는 데 그쳐서, 내의원에서 그 규정들이 실제로 행해졌는가는 알기 어려웠다.

근래 『承政院日記』 등의 전산화로 원문 검색이 용이해지면서 내의원의 실제 운영에 대하여 조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규정에는 없는 여러 관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본고는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의 직임과 인사 관련된 규정 변화의 흐름 등을 살피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법전 및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먼저 내의원 의관 제도 규정을 조사하였다. 그 후 규정의 실제 운영은 『승정원일기』로서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규정 변화의 원인과 영향도 살피려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조선후기 내의원에 대해서 이전보다 폭넓은 이해가 기대된다.

II. 본론

1. 직제규정

1) 법전

『경국대전』 및 조선후기 주요법전의 내의원 내 의관 관련 직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표 1). 법전에 따르면 초기에는 12원의 내의를 두었다가 직장 2원이 감해져서 10원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내의는 체아직으로 6월과 12월 말에 실시되는 양도목 정사에 의해 임명되었다.

표 1. 주요 법전의 내의원 직제 규정

법전명	내용	비고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遞兒兩都目. 正三品 正一員, 從四品 僉正一員, 從五品 判官一員, 從六品 主簿一員 從七品 直長三員, 從八品 奉事二員, 正九品 副奉事二員, 從九品 參奉一員	내의 12
續大典· 吏典 京官職	遞兒兩都目. 從七品 直長減二員	내의 10
大全通編· 吏典 京官職	遞兒兩都目. 正一員 正三品, 僉正一員 從四品, 判官一員 從五品, 主簿一員 從六品, 直長一員 從七品[原 三員 續 減二員], 奉事二員 從八品, 副奉事二員 正九品, 參奉一員 從九品	내의 10
六典條例· 禮典 內醫院 總例	당상관 7원 중에 결원이 없으면 당하관은 절대로 抄啓하지 말라. ⁵⁾	어의 정원 7원

2) 법전 이외 문헌

법전 이외, 내의원 의관 관련 직제를 참조할 문헌은 具允명의 사찬법전인 『典律通補』(1786년)와 내의원 관청지인 『내의원식례』(1810년경)가 있다. 이에 수록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표 2). 앞서 논의되었던 법전만 보면 직장 2원이 감원되면서 얼핏 내의 정원이 10원으로 감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의원식례』를 보면 직장 2원이 줄어든 대신 같은 종7품인 副司正 2원으로 바꾸었으므로 실제 내의의 정원은 12원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換作은 『내의원식례』에 인조 을유년(1645) 때 일로 기록되었는데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관련 기사는 없다. 문헌에서는 ‘御醫’란 용어는 관품이 정3품 상계인 통정대부 이상의 내의청 소속의 당상 의관 및 관품에 관계없이 모든 침의·동참의를 지칭한다. 법전에 규정된 내의원의 직제 규정은 해당 관서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 보직으로서, 내의원 전체의 의관 수는 해당 시기 당상의관의 수에 따라 가변적이다. 당상의관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3품인 내의원정이 내의원의 행정책임자이기는 하나 내의원의 의관을 통솔하는 이는 내의청의 首醫로서 御醫였다. 내의청·침의청·동참청

4) 신유아, 「조선후기 내의원의 기능과 의관의 지위」, 역사와 실학, 2018;65:167-183. 신유아는 내의원의 實職은 양도목 취체에 따른 체아직이 아니며, 정기적으로 녹봉을 받아 전의감과 해민서와는 다른 녹봉 체계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료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내의원의 실직 역시 모두 체아직이다. 그 예로 1725년 6월의 『승정원일기』 기사를 보면 내의원참봉에 대하여 ‘윤홍대가 춘하등 도목정사에 의하여 임명된 참봉 체아직이고, 이만상이 추동등 도목정사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승정원일기』 영조 1년 6월 25일 기사. “又啓曰, 因內醫院薦狀牒呈, 昨日政, 李萬祥參奉啓下矣. 今聞院官尹興大, 方帶春夏等參奉遞兒, 李萬祥則乃是秋冬等當付者, 而本院徑送薦狀, 以致差誤, 既已覺得之後, 不可仍置, 李萬祥姑爲改差, 以待秋等祿都日政事, 更爲下批, 何如? 傳曰, 允.” 즉 『경국대전 이전』 京官職조의 ‘遞兒兩都目’은 서반 衛職 뿐 아니라, 正, 僉正 등의 내의 12원에도 모두 해당된다.

5) “堂上七員中未有缺則堂下切勿抄啓.”

의 三廳 首醫는 『내의원식례』에 따르면 別軍職을 관례에 따라 임명하였다. 여기서 別軍職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내의원식례』에서 首醫 밑의 어의가 받은 衛職이 종4품 副護軍부터 시작하므로 이보다 상위의 衛職으로 추정된다. 『내의원식례』에서 침의청을 효종, 의약동참청을 현종조에 만들었다 함은 해당 廳의 설립을 말한 것으로 내침의와 의약동참의 직임 자체가 그 때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침의와 의약동참의 직임은 16세기 후반인 선조조의 임명 기록이 있다.⁶⁾

國典에 내의의 정원은 12원으로 기록되었고, 의약동참의와 내침의도 규정을 보면 同數이다. 그렇다면 동참청과 침의청의 정원이 처음부터 12원이었을까. 『승정원일기』를 참조하면 동참의와 침의도 처음에는 어의청의 어의처럼 정원이 없었다. 그러다 침의는 1669년(현종 10) 이전에 10원 이하라는 규정이 생겼고,⁷⁾ 의약동참의는 1703년(숙종 29) 이전

에 10원 이하라는 규정이 생겼다.⁸⁾ 10원 규정의 신설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후 1730년(영조 6)에 내의원도제조 洪致中의 의견이 받아들여져⁹⁾ 의약동참과 내침의 각각 12원으로 정원이 확대되었다. 이 때 12원으로 정한 이유는 영조가 말한 “朔有十二, 辰有十二”에서 찾을 수 있다. 1768년의 『전율통보』에 의약동참과 침의의 정원 규정은 반영되었다(표 2). 반면 어의 정원의 법전 반영은 이보다 늦은 시기인 1867년의 『육전조례』에 처음 반영되었다. 1868년(고종 5)의 『승정원일기』 기사를 보면 당상의관을 7원으로 바꾼 것은 經費 문제와 관련이 있다.¹⁰⁾ 내의원의 경비 문제로 상장무관 시상 규정을 보완한 1864년(고종 1)의 『승정원일기』 기사와 연관해 볼 때,¹¹⁾ 당상의관의 정원도 1864년경 신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법전과 여러 문헌에 나타난 조선후기 내의원의 주요 직제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2. 법전 이외 문헌의 내의원 직제 규정

법전명	내용	비고
전율통보 - 이전 京官職	본청은 의과출신자만 임용하는데, 당상 이상관은 어의로 칭하고 정원이 없으며 당하관은 내의로 칭하며 12원인데 그 중 어의를 뽑는다. 의약청의 의약동참은 12원, 침의청의 침의는 12원으로 당상 당하관 가리지 않고 어의라 칭한다. ¹²⁾	어의 정원 정해지지 않음 / 당하내의 12 동참 12 침의 12
내의원식례 - 官制	정·침정·관관·주부 각 1원, 직장 3원[인조 조 율유년(1645)에 2원을 부사정으로 바꾸었다.]. 봉사과 부봉사는 각 2원이고, 참봉은 1원이다.[이상 내의 12원은 의과 출신에 천거를 받은 사람으로 계목을 올려 임명하는데 6월과 12월 정사에 맞추어 올리고 내리고 체직하고 붙인다.] 어의는 정원 없음[내의 중에서 가자되어 높아지거나 동반직에서 벼슬을 옮긴 뒤에는 예에 따라 초기로 임명하고 이어 균직에 붙인다. 내의 중에 의술이 정통한 이를 혹은 하교를 받거나 혹은 연석에서 초기로 겸차한다.]. 침의 12원[효종조 신묘년(1651)에 청을 설립했다.]. 의약동참 12원[현종조 계축년(1673)에 청을 설립했다. ○ 이상은 모두 의학 관청에 속한 여부에 상관없이 의술에 정통한 사람을 당상 당하에 관계없이 초기로 임명한다. ¹³⁾	당하내의 12 (내의 10, 부사정 2) 어의 정원 未定 의약동참 12 침의 12 / ① 別軍職 4 - 首醫3 기타1, ② 어의 체직시 - 후호군 4, 부사직 6, 부사과 2 ③ 침의, 동참 - 후호군 각1, 부사직 각1, 부사과 각1, 그 외는 품계에 따라

6) 『內鍼醫先生案』과 『議藥同參先生案』을 보면 내침의는 선조 때의 朴仁斧부터 의약동참의는 선조 때의 정작(鄭碯)부터 기록되었다.

7)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3월 8일 기사. “本院鍼醫, 無過十員事, 曾爲定奪”

8)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1월 7일 기사. “本院議藥同參, 初以十員定額, 即今現存之員, 已踰其數, 故有闕而不爲差出者久矣.”

9)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1월 6일 기사. “致中曰, 內醫院廳官, 本來十二員, 而至於議藥·鍼醫兩廳, 額數之多少, 本無定規, 曾於先朝, 故相臣崔錫鼎, 以議藥廳額數太多之故, 以限以十員, 其餘盡爲沙汰之意稟請, 則自上使之有闕勿補, 而勿爲沙汰矣. 其後聞有醫術精明者, 則輒爲抄入, 故員數每致過多矣. 即今則議藥廳, 適爲十員, 鍼醫爲十一員, 而針醫爲術, 非特治經絡, 必有治腫者, 使之專其業, 然後可以得力矣. 崔泰齡, 最善治腫, 不幸死矣, 其弟恒齡, 亦爲精明, 泰齡之代, 以恒齡啓下, 何如? 上曰, 依爲之. 致中曰, 恒齡若爲啓下, 則針醫當爲十二員矣. 與廳官額數相合, 諸議以爲議藥廳, 亦當同其額數云, 而其時既已十員陳白, 有同定式, 今若欲變通, 則不可不稟定, 故敢達矣. 三廳額數, 皆定以十二員, 未知, 何如? 上曰, 術業在精, 而不在多矣. 初以十員定額, 未知其宜, 而其後亦多過十員之時, 則此未必爲定規矣. 朔有十二, 辰有十二, 依所達爲之好矣. 致中曰, 然則議藥廳, 當爲加出二員矣.”

10) 『승정원일기』 고종 5년 7월 27일 기사. “內醫院啓曰, 醫官堂上之無定數, 揆以官制, 合有變通. 且其經費之無限節, 不可不念, 而年前之七員定額, 旋又解紐, 尙爲十二員之多矣. 自今更爲申明, 堂下中雖有積任應資之人, 待其堂上七員內有闕, 然後始許抄啓加資, 而上掌務三次前, 勿爲學論, 其代差之際, 如有在任遭故人, 首先復屬之意, 揭板定式, 何如?”

11) 『승정원일기』 고종 1년 8월 9일 기사. “內醫之聊賴, 只上掌務官一窠, 而若徑先加資, 則渠輩不無抑鬱, 且以經費言之. 殆無限節, 故年前以已經上掌務三次後, 始爲加資之意, 筵稟定式矣.”

12) 本廳用醫科人, 堂上以上, 稱御醫, 無定數, 堂下, 稱內醫, 十二, 其中抄御醫, 議藥廳, 議藥同參十二, 鍼醫廳 鍼醫十二, 並毋論堂上·堂下, 稱御醫

13) 正·僉正·判官·主簿各一員, 直長三員 [仁祖朝乙酉, 二員換作副司正]. 奉事·副奉事各二員, 參奉一員 [以上內醫十二員, 以醫科. 被薦人, 啓目差下, 六臘月升降遞付]. 御醫無定額 [內醫中加貴, 或東班遷轉後, 例爲草記差下, 仍付軍職. 內醫中術業精通者, 或因下教, 或筵稟後, 草記兼差]. 鍼醫十二員 [孝宗朝辛卯, 設廳]. 議藥同參十二員 [顯宗朝癸丑, 設廳. ○以上並, 以醫司, 或方外士人, 術業精明者, 無論堂上堂下, 草記差下]. 別軍職, 罷散

표 3. 조선후기 주요 내의원 직제 변화

시기	내용	출전	비고
1645년 (인조 2)	내의원직장 2원을 부사정으로 바꿈	내의원식례 관제조	속대전에 처음 반영
1650년 (효종 1)	침의청 설치	내의원식례 관제조	침의 정원 未定
1669년 (현종 10) 이전	침의 정원은 10원 이하	승정원일기	침의 정원
1673년 (현종 14)	동참청 설치	내의원식례 관제조	동참의 정원 未定
1703년 (숙종 29) 이전	의약동참 정원 10원	승정원일기	동참의 정원
1730년 (영조 6)	동참과 침의 정원을 12원 한정	승정원일기	-
1864년 (고종 1)	어의 정원을 7원으로 한정 (어의 정원 신설)	승정원일기	육진조례에 반영

2. 운영과 실태

1) 임명

(1) 첫 임명

고종 때 행정법전인 『육진조례』에 따르면 삼의청(내의청, 침의청, 동참청) 의관에 결원이 생기면 世醫 자손을 承傳을 받아 擬望하도록 하였다. 다른 기술직 관청의 입속이 취재와 과거의 합격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내의원은 왕의 윤허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임명 방식은 내의원 의관들의 신분을 다른 기술직 관원들과 구분 짓게 만드는 시작점이다.

『전율통보』와 『내의원식례』에서는 내의 12원의 자격에 대하여 醫科 출신자로서만 제한하고 있으므로(표 2), 조선후기 내의와 내의청 소속의 御醫라면 『醫科榜目』의 기록이 없더라도 의과 출신자로 추정할 수 있다.¹⁴⁾

내침의와 의약동참의는 의료 관청의 소속이 아니더라도 의업이 뛰어난 이를 堂上·堂下에 관계없이 草記를 올려 국왕의 재가로 임명하였다(표 2, 『내의원식례』). 본청의 어의 즉 당상의관은 기존 본청의 당하의관 즉 내의가 加資를 받아 通政大夫 이상의 관계를 받음으로 당상관이 된 것이다. 조선후기에 내의 출신이 아닌 이는 본청의 당상의관이 되지 않고 의약동참이나 침의가 된다. 그런데 당상관 7원 중

결원이 없으면 당하관 중에서 초계함을 금지하고 있어 기존에 정원이 없던 당상의관이 고종 초에 오면 7원으로 고정되었다.

어의와 별도로 ‘兼御醫’의 제도가 있었다. 겸어의를 다른 말로 ‘兼差御醫’로도 부른다.¹⁵⁾ 겸어의를 당하관으로서 내의이지만 어의를 겸하였다. 겸어위에 대한 규정으로는 『내의원식례』 관제 조에서 “내의 중에 의술이 정통한 이를 혹은 하교를 받거나 혹은 연석에서 초기로 겸차한다.”라 하였다. 이들 겸어위는 내의 12원의 정원에 포함되었다. 그 예로 1666년(현종 7)의 『승정원일기』 기사에서 당상어의, 당하겸어의, 내의를 구분하는데, 당하겸어위와 내의를 합쳐 12원이 된다.¹⁶⁾ 『승정원일기』에서 언급된 겸어위는 14명이다(표 4).

이들 중 겸어의 임명 당시의 官階를 파악할 수 있는 5명으로, 5명 모두가 겸어위로서 재직 당시 官階는 정3품 하계인 통훈대부이다.¹⁷⁾ 그렇다면 겸어위의 官階는 정3품 하계인 통훈대부 내지 禦侮將軍으로 추정 가능하다. ‘堂下兼御醫’란 용어는 현종 때 『승정원일기』 기사에도 나오므로 17세기 중반에는 겸어위제도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 이전 사료에서는 찾을 수 없어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겸어위는 당하관으로 내의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당상관인 어의의 지위를 누린다. 그러므로 어의의 정원을 확대하여 내의원 의관에게 자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料四窠 [三窠三廳首醫例付, 一窠, 稟旨差下]. 副司直六窠, 副司果二窠 [御醫遞付, 而員額過此數, 則例付堂上厚料]. 副護軍二窠, 副司直二窠, 副司果二窠 [鍼醫·議藥同參, 各付一窠, 而此外員額, 隨品例付厚料]. 酒房官二員 [掌釀酒, 英宗朝丙戌, 因特教革罷, 掌務官兼]. 種藥官二員 [掌藥田. ○以上內醫中輪差, 六臘月交遞].

14) 조선전기의 경우 追薦에 의하여 내의원입속이 가능하였으므로 후기와는 다르다.

15)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3월 27일 기사. “內醫朴明達, 入屬既久, 術業且精, 兼差御醫.”

16) 『승정원일기』 현종 7년 10월 5일 기사. “今則堂上御醫七員, 堂下兼御醫者二員, 內醫十員, 今此朔布, 依丁酉年例上下, 則或受或否, 事甚不均”

17) 통정대부라면 위직이 부호군이나 僉知, 가선대부라면 위직이 호군이나 同知가 주어지며 통훈대부일 경우 부사과가 주어졌다.

표 4. 『승정원일기』의 겸차어의 기록

	시기	인물	당시의 官階
1	1763(영조 39).7.15.	李養善	미상
2	1770(영조 46).7.11.	許礪·康命徽	미상
3	1771(영조 47).12.17.	金光顯	미상
4	1773(영조 49).3.27.	朴明達 - 差下	미상
5	1773.6.24.	洪達洙 - 差下	미상
6	1773(영조 49).7.7.	慶成運·朴明達	慶成運은 1775년 9월 21일 通政大夫 加資
7	1775(영조 51).5.12.	邊致翰·金相祐 - 差下	邊致翰은 1790년 1월 15일에 가자, 2월 6일에 副護軍 兼수
8	1775(영조 51).8.15.	崔尙圭·金相祐	미상
9	1775(영조 51).10.4.	方泰衍	미상
10	1791(정조 15).3.27.	李惟鑑·秦泳 - 差下	李惟鑑 1796년 1월 27일에 탈상으로 환속하면서 副司果 兼수 秦泳 1801년 12월 2일 通政大夫 가자
11	1792(정조 16).7.2.	吳仁豐 - 差下	吳仁豐 1802년 10월 9일 通政大夫에 가자

(2) 재임명

기존의 내의가 내의로 재임명되는 사례는 甄復과 起復의 2가지가 있다.

甄復이란 벼슬에서 물러난 이가 甄差에 응하여 복직하는 것으로 『내의원식례』에서는 군수·현령·찰방 등 外任을 맡

았다가 그만두었거나, 부모의 상으로 그만두었다가 탈상하여 복직하는 사례를 그 예로 들었다. 『육전조례』에 따르면 부모의 상으로 그만두었다가 복직하는 경우, 어의는 五衛의 軍職에 임명하며, 내의는 다음에 자리가 비는 대로 이전 직임에 임명하였다. 甄復의 경우, 별도의 擬望 절차 없이 草記에 임명되었다(표 5, 『내의원식례』).

표 5. 내의원 임명 규정

문헌명	내용
내의원식례 - 관계	견복[어의가 외임을 하다가 체직되어 돌아오는 경우 및 체직 중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탈상을 기다렸다가 초기로 다시 임명한다. ○ 내침의와 의약동참은 어의의 예와 동일하다. ○ 대령의관 중에 혹 파직되거나 삭직되는 빌을 받게 되거나 해유에 구애받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 품지하여 일시적으로 급료를 준다. ○ 내의가 재임하다가 상을 당한 경우에는 자리가 비는 대로 즉시 임명하고, 만일 까닭없이 산관이 된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만둔 차례대로 이전 직임에 임명하고, 임명할 사람이 없는 뒤에야 비로소 외의로 계하하도록 수교로 정식을 삼았다. ¹⁸⁾
육전조례 예전 - 內醫院 總例	○삼청의관의 권원을 대신하여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世醫의 자손을 찾는다. ○삼청 諸醫는 빈자리를 기다려 擬望으로 承傳하여 兼수한다. ○어의가 부모 상을 당하면 탈상하기를 기다려 衛職에 붙인다.[동참과 침의도 동일하다.] ○내의가 부모 상을 당하면 탈상하기를 기다려 다음 차례에 권원이 있기를 기다려 원래의 자리에 還差하는데[還屬할 때에는 먼저 탈상한 이를 加出한다.], 임명할 사람이 없으면 외의로서 계하한다.[특고로서 그만 둔 사람을 말해서는 아니된다.] ○당상관 7원 중에 결원이 없으면 당하관은 절대로 抄啓하지 말라. ○내의 중에 내외직을 겸대할 때에는 동참과 침의 또한 동일하게 예를 따른다. ○ 당하의관이 상장무관을 세 차례 역임해야 비로소 가자의 후보자에 올린다. ¹⁹⁾

起復이란 부모의 상으로 그만두었던 의관이 탈상하지 않고 喪중에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으로 起復出仕의 줄임말이다. 임금의 특별 교지가 있으면 의정부에서 議案을 가지고 예조에서 臺諫의 署經을 참고하여 公牒을 내어 시행하였다

(표 5, 『내의원식례』).

이처럼 내의원 소속의 의관은 여러 사유로 벼슬을 그만두었다가 환속함에 그 자리가 보장되었다. 이 점 또한 다른 기술직 관원들과 차이가 있다. 한 번 내의가 되면 본인의 업

18) 甄復[御醫, 外任遞來及在任遭故, 待闋服, 草記還差. ○鍼醫藥藥同參, 同御醫例. ○待令醫官中, 或坐罷削, 或拘解由, 隨時, 稟旨權着給料. ○內醫在任遭喪之類, 隨闋即差事, 及如有無故作散人, 隨其落仕次第, 差下前仕, 無可差人, 然後始以外醫啓下事, 受教定式]. 起復 [如有特教, 則報禮書, 出依牒施行].

19) ○三廳醫官有關代差, 必尋世醫子孫. ○三廳諸醫除職承傳待窠擬望. ○御醫遭故人, 待闋服還付衛職[同參鍼醫同] ○內醫遭故人, 以待闋服, 次第隨闋, 還差前仕[還屬時雖有加出先付闋服人], 而無可差人則以外醫啓下[因特教除, 汰之人不得學論] ○堂上七員中未有缺則堂下切勿抄啓 ○內醫中有內外職兼帶之時同參鍼醫亦同比例 ○堂下醫官之三次經上掌務者始擬加資

무적인 잘못이 없는 한 그의 직임은 계속적으로 보장되었다. 반면 다른 기술직 관원은 사역원의 常仕堂上을 제외하면²⁰⁾ 다시 취재 등을 통하여야 했다.

(3) 加差內醫

그런데 『승정원일기』를 보면 ‘加差內醫’라는 직임이 24회 나온다(표 6). ‘加差’란 정원 외에 더 임명하는 것으로 내의의 정원은 12원이므로 내의가 13원 이상이면 가차내의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가차내의는 정조 이후 시기부터 언급되며 특히 고종 대에 17회 언급되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고종대에 가차내의 임명이 빈번해지는 까닭은 고종대 의과 급제자가 증가한 상황과 관련되어 보인다.²¹⁾ 가차내의의 상설 직제화는 12원이었던 내의 정원을 추가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숙종대 말 이후 기술직 관청에서는 國典의 정원 규정을 지키면서도 실제로는 기술직의 정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관상감의 경우 원래 士人이 진출하던 6품 兼教授 5원 중에 숙종대 말에 1원을 기술직이 차지하였고, 1750년(영조 26)에 이르러 나머지 4원도 기술직이 진출하였다. 검교수직은 45개월 근무 이후 동반직으로 遷轉되었으므로, 관상감 기술직에게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셈이다.²²⁾ 또한 도화서의 경우에 1781년(정조 5)에 별제 대신 검교수직이 신설되었는데 이 또한 별제가 士人 중에서 임명되었음을 감안하면 畫員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한 셈이었다.²³⁾

정조 이후 ‘加差內醫’는 기존에 내의였던 이들의 재임명 과정에서 내의원에 실직이 없는 경우에 주어지는 임시 자리였다. 그렇다면 정조 이전에 기존에 내의였던 이들이 환속하는데 자리가 없으면 어찌했을까. 1765년(영조 41) 6월의 『승정원일기』 기사를 보면 당하의관 許濫이 終制하여 내의원에 환속하게 되는데 ‘元額 외의 加差는 결원이 있더라도 보충하지 말라’하여²⁴⁾ 임시직으로 임명되지 않았다. 즉 영조 때만 하더라도 환속한 내의는 기존의 내의가 외임을 받는 등 빈 자리가 생긴 이후에야 임명되었다. 어의의 경우 내의와 달리 ‘加差’라는 표현이 없는데 원래 별도의 정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환속 사유가 생기면 바로 어의로 임명되었다.

1874년의 『승정원일기』 기사에서는 가차내의와 기존 내의의 복속 중에 가차내의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규정의 신설을 보여준다(표 6).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육전조례』(표 5)의 규정을 보면 탈상한 내의의 복속이 가차내의보다 우선시되었을 것이다.

표 6. 『승정원일기』의 加差內醫 기록

	시기	내용
1	1793(정조 17).11.25.	가차내의 崔遠基를 陞實
2	1799.11.24	가차내의 朴烜을 陞實
3	1802(순조 2).4.3.	가차내의 玄在德을 陞實
4	1814.윤2.29	가차내의 崔暄을 임명
5	1820.9.4.	가차내의 秦慶煥을 임명
6	1858(철종 9).1.2.	가차내의 李章嫻를 임명
7	1861.5.25.	가차내의 朴完鏞·崔性愚·李在瑗을 승실한다.

20) 『통문관지』를 보면 조선후기 사역원에는 ‘常仕堂上’이라 부르는 당상역관이 있다. 그 수도 정원이 없었으며 별도의 청을 구성했다. 그 수도 정원이 없었으며 별도의 청을 구성했다.(『통문관지 권1 연혁』 原籍조). 상사당상은 登科(역과 급제), 祿職(사역원 직임), 等第(사행 원역 직임)의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역임한 이로(우현정. 『조선후기 역관 양성의 실제』. 교육사학연구. 2021;31(1):70-71) 이들은 사역원에서 ‘訓上堂上’(12원 정원)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맡았다(『통문관지 권1 연혁』 官制조).

21) 의과는 원래 증광시와 식년시 9명의 등과자를 배출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1874년 이후의 의과에서는 2배수 이상의 등과자를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등과자가 많아지면 의과에 합격하고도 직임에 임명되지 못한 이들이 많아지게 된다.

22) 경석현. 『조선 정조 대 관상감 검교수 제도의 정비와 그 의미』. 한국사연구. 2021;193:223.

23) 경석현. op. cit. p. 231-232.

24)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6월 18일 기사. “鳳漢曰, 內醫院醫官遭故終制中, 吳道炯, 卽堂上官, 故頃日前都提調, 先爲陳稟還屬, 而至於許濫, 乃是堂下, 尤不可循例還屬, 勢當待其有窠, 始可舉論矣. 上曰, 此人豈可如是? 特爲還屬可也. 鳳漢曰, 此是元額外加差者, 前頭有闕勿補事, 奉承傳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8	1874(고종 11).10.6.	加差內醫는 자리 나기를 기다려 陞實하라는 承傳이 있어, 3인이 모두 黜員을 생겨 실직에 임명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현재 내의는 아버지의 삼년상을 끝내고 복직하지 못한 이가 일찍이 3인이 있습니다. 적체가 된 것으로 또한 마음에 꼭 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의의 빈자리는 먼저 가차 1인을 승실하고 다음으로 3년상을 마친 이를 복직하기로 자리를 나누어 수용한다면, 치우쳐서 생기는 억울함이 없겠으니, 이를 정식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²⁵⁾
9	1875.7.1.	내의 鄭宜謙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차내의 李命錫을 초기 정식에 의하여 임명한다.
10	1875.10.9.	내의 李命錫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차내의 李好錫을 이번에 초기 정식에 의하여 임명한다.
11	1876.1.16.	내의 중 연로하고 오래 근무한 李漢慶를 가차하고 대신하여 가차내의 李基徹를 정식에 의하여 승실한다.
12	1879.7.16.	내의 崔性協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차내의 鄭鍾夏을 이번 차례에 이전 초기 정식에 의하여 임명한다.
13	1879.7.29.	내의 金在瑚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차내의 安秉宜을 이번 차례에 이전 초기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한다.
14	1881(고종 18).6.5.	내의 邊應翼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차내의 朴鍾福을 이번 차례에 이전 초기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한다.
15	1882(고종 19).3.28.	가차내의 崔奎憲, 침의 李元基, 의약동참 金東澈이 이미 삼년상을 마쳤으니 모두 예에 따라 본원으로 환속시켜야 하니 해당 조로 하여금 근무에 임명한다.
16	1886(고종 23).5.30.	내의 高俊永의 身病으로 인하여 체직을 청하니, 특별히 減下하고 대신하여 가차내의 李命僖를 이번 차례에 예에 따라 임명한다.
17	1886.6.27.	내의 李兢懋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차내의 尹豐楨을 이번 차례에 정식에 의하여 초기로서 임명한다.
18	1886.8.30.	내의 安秉宜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차내의 李鍾林을 이번 차례에 정식에 의하여 초기로서 임명한다.
19	1886.10.30.	내의 李命僖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차내의 李忠根을 이번 차례에 정식에 의하여 초기로서 임명한다.
20	1890(고종 27).10.25.	내의 金興圭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차내의 李命倫을 이번 차례에 정식에 의하여 임명한다.
21	1892(고종 29).1.28.	내의 李聖雨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차내의 醫劉漢胄을 이번 차례에 정식에 의하여 초기로서 임명한다.
22	1892.6.27.	내의 李鍾林의 가차를 別單으로 陞下한다. 陞下에 의하여 내의 李鍾林를 가차하고 그 대신에 가차내의 李禹善을 정식에 의하여 초기로서 임명한다.
23	1893(고종 30).6.30.	내의 崔奎憲를 특별히 가차하고 그 대신에 가차내의 李準正·玄東完을 이번 차례에 정식에 의하여 함께 승차한다.
24	1894(고종 31).9.24.	어의 鄭鍾夏·劉漢柱가 身病으로 인한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차내의 李舜善·金東錫를 이번 차례에 정식에 의해 올려 임명한다.

국왕별 가차내의 비율

국왕	정조	순조	철종	고종	전체
인원	2	3	4	19	28
비율%	7.14	10.71	14.29	67.86	100

2) 승진과 감하

(1) 관례에 따른 승진

『육전조례』는 내의원의 관례에 대하여 가장 상세한 문헌이다. 이에 따르면 관례에 따른 승진은 3가지이다.

첫째, 의약동참이나 내침의에 입속한 후 30개월이 지나면 관례적으로 虛司果에 임명하였다. 虛司果란 녹봉을 주기 위해 붙이는 자리로 실제 五衛에서의 업무는 없었다. 그러

나 이는 陞六하는 의미가 있었기에 의관들에게 매우 중요했다. 이 규정은 의약동참의 경우 1686년(숙종 12) 1월에, 내침의의 경우 1718년(숙종 44) 11월에 신설되었다(표 7).

둘째, 삼청 의관 중에서 근무 성적이 좋은 이들은 6개월마다 행해지던 도목정사 때 이조와 병조로 遷轉하였다. 『내의원식례』에서는 遷轉에 대하여 어의·내침의·의약동참의는 三望을 이조와 병조에, 내의의 경우는 三望을 이조에 보고하게 하였다.

25)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10월 6일 기사. “加差內醫, 待窶陞實承傳, 有三人, 竝當隨闕實差, 而見今內醫, 闕制未復職者, 既有三人, 則其所積滯, 亦不可不念. 自今爲始, 內醫有闕, 則先以加差一人陞實, 次以闕制一人復職, 間窶收用, 可無偏鬱之歎, 以此定式施行.”

표 7. 조선후기 중 내의원 승진 규정 변화

시기	내용	출전	비고
1686(숙종12).1.13.	의약동참의 입속후 30개월이 지나면 虛司果에 붙이기로 함	승정원일기	육전조례 반영
1704(숙종30).5.20.	침감조관이 침자를 진상한 뒤에 승륙하거나 상당직제수가 前例	승정원일기	내의원식례 반영
1718(숙종44).11.19	내침의 입속 후 30개월이 지나면 虛司果에 붙이기로 함	승정원일기	육전조례 반영
1861(철종12).5.25.	1. 어의 정원 신설 2. 내의원 상장무관은 3차례 역임해야 가자를 시행함	승정원일기	육전조례 반영

셋째, 당하의관이 上掌務官을 3차례 역임하면 비로소 加資 대상이 되었다. 상장무관은 원래 1차례만 역임해도 가자 대상이었는데 1861년(철종 12)에 이르러 강화된 것이다(표 8). 기존의 경우, 상장무관이 되면 자동으로 가자가 되므로, 당하의관이 당상관으로 어의가 되는 데 소요되는 기한이 줄어들어 드는 반면, 3차례 상장무관 역임을 필수 조건으로 하면, 3차례 도목에서 상장무관이 되어야 겨우 가자되므로 어의가 되는 데 소요되는 기한이 길어진다. 『내의원식례』에 의하면 내의원의 장무관은 2원으로 ‘上下’를 붙여서 구분하였으며 내의원의 일체 사무를 담당하는 이였다. 장무관은 『승정원일기』를 참조하면²⁶⁾ 종6품 내의원주부와 종7품 내의원직장으로 주부가 상장무관, 직장이 하장무관이 된다. 『내의원식례』에 의하면 내의원직장이 3원에서 1원으로 줄어든 것은 1645년의 일로 그 이전의 장무관 수는 2원보다 많다. 예를 들어 1628년 4월의 『승정원일기』 기사에서는 내의원 장무관이 3원이다.²⁷⁾

이 3가지 외에 鍼監造官의 승진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鍼監造官은 침의청 소속으로 왕실에서 소용되는 침을 만들었는데, 침을 제조하여 진상하면 참상관이면 6품으로 올리는 陞六을 하거나 이미 6품관이면 相當職을 제수하게 하였다.²⁸⁾ 이 규정은 1704년(숙종 30)의 『승정원일기』 기사에서도 이미 前例라 지칭되므로 그 이전부터 있던 규정인데 신설 시기는 알 수 없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관이 原從勳이 되는 경우에도 내의는 加資 대상이 되었다.²⁹⁾ 여러 『녹훈도감의례』를 통해 원

종공신 녹훈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된 규례가 있는데, 이중 내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공신회맹제에서 왕을 시위한 의관은 녹훈 규정이다. 회맹제 당시의 대령의관 즉 어의들이 시위의관에 규례에 따라 모두 가자되었다. 1728년 양무원 종공신이 마지막 녹훈이므로 시위의관으로 가자된 사례는 영조 때가 마지막이다.

1840-1841년 사이에 저술된 『度支五禮考』를 보면 의약관련하여 관례적인 賞典이 기록되었다.³⁰⁾ 그 중 내의원 관련 상전은 「患後平復」과 「産室廳」 2항목이다. 이는 질병의 발생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特加의 형식을 가지나, 실제로는 의약청과 산실청 설청에 따른 관례적인 성격의 상전이였다. 「환후평복」은 말 그대로 내의원에 의약청이 설청된 후 질환이 치료되고 나면 참여했던 원역들에게 내리는 상전이다. 「산실청」은 왕비 출산 때 설청된 산실청과 安胎 관련하여 지급된 상전이다. 둘 다 참여했던 의관들에게 加資를 내리거나 당하의관의 경우 準職이 제수되었다. 『탁지오례고』는 정조 이후의 내역만 소개되었지만 『승정원일기』 등을 통해 정조 이전에도 의약청과 산실청 참여 의관들에 대한 상전들은 확인되므로 오래된 관례였다.

다른 기술직 관원들도 예를 들어 관상감검교수 같은 관직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관례적으로 동반직으로 천전하거나 승륙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기술직 관원들이 특정 몇 자리에 불과한 기회가 내의원에서는 직군 전반적으로 주어졌다. 따라서 내의원이 다른 기술직 관청들과 다르게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26)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2월 25일 기사. “內醫院判官安世淵, 掌務官崔宗衡·金致儉, 內醫院奉事方泰智

27) 『승정원일기』 인조 6년 4월 14일 기사. “掌務安國信·許瀟·金嗣男, 兒馬一匹賜給”

28)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5월 20일 기사. “鍼監造官考例施實事, 命下矣。取考前例, 則或有相當職除授之教, 或陞出六品之命.”

29) 박훈평. 「의관의 원종공신 녹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2):86-87.

30) 박훈평. 「조선후기 의약 관련 왕실 의례 연구 - 탁지오례고를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26-27.

표 8. 여러 문헌의 내의원 승진 규정

문헌명	항목	내용	비고
승정원일기 (1686년)	숙종 12년 1월 13일 기사	의약동참의관은 근무를 열심히하거나 십년이 넘게 근무하여도 천전에 대한 별다른 규례에 없습니다. 軍門의관은 모두 30개월만 근무하면 陞出하여 虛司果가 되니 - 중략 - 현재의 동참의 중에 아직 陞出하지 못한 이는 5년 이상은 모두 허사과 6품에 붙이고, 이후로 30개월을 기한으로 허사과에 붙이는 것을 정식으로 시행하려 합니다. ³¹⁾	의약동참의 陞六 규정 신설
上同 (1718년)	숙종 44년 11월 19일 기사	의약청은 입속후 30개월이 지나면 관례적으로 허사과에 붙이는 데, 침의청은 지중교수 한 자리만 60개월을 근무해야 비로소 陞六하니 - 중략 - 침의청 또한 의약청의 사례를 따라 30개월을 근무하면 허사과로서 出六함을 정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³²⁾	내침의 陞六 규정 신설
上同 (1861)	철종 12년 5월 25일 기사	당상은 7인 외에는 임금 앞에서 아뢰지 말고 - 중략 - 차후에는 일찍이 상장무관을 3차례 역임한 이만 초계하고, - 하략 - ³³⁾	어의원정원 신설 / 상장무관 시상 수정
육전조례 (1867)	예전 내의원 총례	○의약동참과 침의가 입속하여 30개월이 되면 예에 따라 虛司果에 붙인다. 삼청의관 중에 열심히 근무한 이를 골라 도목 정사에 상관없이 이조와 병전으로 천전하여 보낸다. ○당상관 7원 중에 결원이 없으면 당하관은 절대로 抄啓하지 말라. ○내의 중에 내외직을 겸대할 때에는 동참과 침의 또한 동일하게 예를 따른다. ○ 당하의관이 상장무관을 세 차례 역임해야 비로소 加資의 후보자에 올린다. ³⁴⁾	의약동참의 내침의 승륙 규정 / 당상의관 정원 규정 / 내의 내외직 겸대 규정 / 상장무관 시상 규정
내의원식례 (1810년경)	관제	침감조관[침의를 세 해 간격으로 임명한다. ○침자를 진상한 뒤에 상당직을 제수하라는 승진은 전례가 한결같지 않으니 다시 규례를 상고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 정식으로 삼으라고 정조 조 경신년(1800)의 수교가 있었다.] ³⁵⁾	침감조관 시상 규정

(2) 특별 승진

특별승진은 말 그대로 국왕의 전교에 의하여 특별히 가자[特加]되거나 遷轉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1836년(헌종 2)과 1849년(헌종 15)의 『승정원일기』를 보면 당시 어의청의 首醫가 老病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자 다른 어의를 特加하여 일시적으로 首醫 역할을 대신하게 하였다. 내의청의 三廳은 각 청별로 首醫 1원씩이 있는데 당상의관 중에 서도 더 높은 官階를 가진 이들이었다. 首醫는 왕에게 입진

할 때에 다른 의관들을 領率하였다. 首醫職 수행을 위한 특가는 현종조 이후에 사례가 있다. 이는 의관들의 官秩이 높아짐에 따라 首醫가 이들보다 官秩이 더 높아야 하는 상황에 따라 초래된 것이다. 다른 어의들의 官秩이 전반적으로 낮다면 首醫의 官秩 또한 지나치게 높을 필요가 없었다. 領率의관 부족으로 인한 특가는 고종조에 빈번해지며 1원이 아닌 3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의관의 고위직 官秩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31)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1월 13일 기사. “壽興曰, 議藥同參醫官, 積仕勤苦, 或至十年之久, 而無他遷轉之規, 蓋以設立未久, 當初未有定式故也. 各軍門醫官, 皆以三十朔, 陞出虛司果, 而至於內局醫官, 在於議藥之地者, 反不如軍門醫官, 不但渠輩之稱冤, 亦非激勸之道, 目今醫官之積任, 而未得陞出者, 限五年以上, 陞付虛司果六品, 而此後則以三十朔爲限, 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32) 『승정원일기』 숙종 44년 11월 19일 기사. “議藥廳則例於入屬後三十朔, 以虛司果出六, 而至於鍼醫廳, 則以治瘧教授一窠, 次次付職, 至於六十朔後, 始爲升六, 而今又因臺書所論, 以三十朔, 變爲六十朔, 若再經六十朔, 則針醫入屬, 過十餘年, 乃得陞六矣. 諸議藥廳, 殊甚不均, 請依議藥廳例, 入屬三十朔後, 以虛司果出六事, 定式, 何如?”

33) 『승정원일기』 철종 12년 5월 25일 기사. “成命也而堂上七人外, 無得抄啓筵奏, 揭板屬耳, 不可一切毀割, 此後則只以曾經上掌務三次人抄啓, 其代則雖有加出之時, 以復職當次人首先差下事, 定式施行, - 하략 -”

34) ○議藥同參鍼醫入屬三十朔, 例付虛司果, 三廳醫官中擇勤勞人, 每都日, 移送兩銓遷轉. ○堂上七員中未有缺則堂下切勿抄啓. ○內醫中有內外職兼帶之時同參鍼醫亦同比例. ○堂下醫官之三次經上掌務者始擬加資

35) 鍼監造官[鍼醫間三年差下. ○鍼子進上後, 相當職除授, 承傳, 前例不一, 更爲考例, 指一定式事, 正宗朝庚申受教].

표 9. 『승정원일기』 首醫 관련 특별 승진 사례

항목	내용
1836년(헌종2) 4월 5일	내의원의 입진시 領率하는 책임이 首醫의 老病으로 인하여 다른 秩이 높은 이 없이 오래도록 비어있으니, 사리와 체면이 극히 미안합니다. 당상의관 崔暄를 특별히 1자급을 올려 임시로 편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³⁶⁾
1849년(헌종15) 1월 10일	(내의원)이 매번 입진할 때에 의관을 領率하는 책임을 현재 秩이 높은 이가 적어서 혹 비게하는 폐단이 있으니 사리와 체면이 극히 미안합니다. 당상의관 卞宗浩를 특별히 1자급을 올려 편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 하략 - ³⁷⁾
1866년(고종3) 3월 20일	영술의관이 현재 수가 적어, 당상의관 李重植을 특별히 1자급을 올려 영술에 임명하고자 합니다. ³⁸⁾
1869년(고종6) 1월 23일	영술의관이 현재 수가 적어, 당상의관 卞鍾協과 李宗憲을 아울러 특별히 1자급을 올려 영술에 임명하고자 합니다. ³⁹⁾
1871년(고종8) 1월 22일	영술의관이 현재 수가 적어, 당상의관 金鴻男·吳景煥·卞哲淵을 특별히 1자급을 올려 영술에 임명하고자 합니다. ⁴⁰⁾
1872년(고종9) 4월 2일	영술의관이 현재 수가 적어, 당상의관 劉漢緯·李敬仁을 특별히 1자급을 올려 영술에 임명하고자 합니다. ⁴¹⁾

(3) 姑降과 還陞

‘姑降’이란 말 그대로 잠시 직을 내림을 이야기한다. 『내의원식례』 入番조를 보면 궁중 內藥房에 上番은 어의 1원, 下番 내의 1원, 침의 1원, 의약동참 1원이 入番하였다. 한번의 입직 인원이 부족하다면, 姑降과 하여 어의를 내의로 내려서 한번 내의로서 입직하게 하였다. ‘姑降入直之例’는 현존하는 다른 규정에는 발견되지 않는데 『승정원일기』를 보면 전례적인 것⁴²⁾이다. 그러나 원래의 관품을 減資하는 것은 아니다. 1770년(영조 46)에 어의 康命徽의 경우 7월 11일 姑降되었다가 한번 내의의 수가 채워지자 9월 26일 다시 어의로 還陞되었다(표 10). 姑降 기간은 한번 내의청의 상황에 따라 정해졌다. 그런데 『승정원일기』를 보면 이

들 姑降 대상은 ‘內醫之兼御醫’라 지칭된다. 즉 여기서 姑降 관련 내용에서 언급되는 어의는 당상관 이상의 어의가 아니라 兼御醫이다. 겸어의의 수가 많아지면 한번의 입직 인원이 부족해졌던 이유는 내의 중 장무관은 별도로 입직하므로 빠지고(2원),⁴³⁾ 겸어의도 나머지 내의 10원에 속하므로, 겸어의의 수가 늘어날수록 下番 입직에 해당되는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姑降를 통한 下番의 입직 사례가 경종 이후에 빈번해지는 것일까. 이는 의관들이 이전 시기에 비하여 높은 官階를 받게 되었던 상황과 관련된다. 대령의관들이 의약의 공으로 가자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의관 본인이 가자되기도 하였고, 고위직 의관의 경우에는 窮資시에 그들이 代加하였다.

36) 『승정원일기』 헌종 2년 4월 5일 기사. “又以內醫院都提調·提調意啓曰, 本院入診時領率之任, 因首醫老病, 無他秩高之人, 曠闕已久, 事面極爲未安. 堂上醫官崔暄, 特加一資, 使之姑爲從便舉行.”

37) 『승정원일기』 헌종 15년 1월 10일 기사. “南性教, 以內醫院都提調意啓曰, 每於入診時, 有醫官領率之任, 見今秩高之人乏少, 或有曠闕之之弊, 事體極爲未安. 堂上醫官卞宗浩, 特加一資, 使之從便舉行 - 하략 -”

38) 『승정원일기』 고종 3년 3월 20일 기사. “領率醫官見今數少, 堂上醫官李重植, 特加一資, 領率差下, 何如?”

39) 『승정원일기』 고종 6년 1월 23일 기사. “領率醫官, 見今數少, 堂上醫官卞鍾協·李宗憲, 並特加一資, 領率差下, 何如?”

40) 『승정원일기』 고종 8년 1월 22일 기사. “領率醫官, 見今數少, 堂上醫官金鴻男·吳景煥·卞哲淵, 特加一資, 並領率差下.”

41) 『승정원일기』 고종 9년 4월 2일 기사. “領率醫官, 見今數少, 堂上醫官劉漢緯·李敬仁, 特加一資, 領率差下.”

42)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7월 15일 기사. “具允鉉, 以內醫院官員, 以都提調·提調意啓曰, 近來內醫之兼御醫者甚多, 番次極其苟艱. 在前如此之時, 亦有姑降入直之例, 御醫中李養善, 依前例姑降, 入直於內醫廳, 何如? 傳曰, 允.”

43) 『내의원식례』 入番조를 보면 장무관도 1원씩 입직하였다.

표 10. 『승정원일기』의 姑降入直之例 기록

	시기	내용	인원
1	1723(경종3).1.10.	어의 중 金文衍·金壽峴·崔德齡 3인을 姑降하여 내의 본청에서 입직시키겠습니다.	3원
2	1742(영조18).2.29	姑降하여 입직하는 예에 따라 어의 중 權峻·崔始崙 2인을 姑降하여 내의 본청에서 입직시키겠습니다.	2원
3	1743.2.21.	지금 내의 원수가 자못 여유로워 전일 姑降한 어의 2인을 還陞하겠습니다.	2원 還陞
4	1763.7.15.	姑降하여 입직하는 예에 따라 어의 중 李養善를 전례에 따라 姑降하여 내의 청에 입직시키겠습니다.	1원
5	1770.7.11.	姑降하여 입직하는 예에 따라 어의 중 許礪·康命徽, 전례에 따라 姑降하여 내의 청에 입직시키겠습니다.	2원
6	1770.9.26.	본원 어의인 康命徽는 일찍이 내의 番次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姑降하여 입직시켰습니다. 이제 한번 당직 인원이 자못 갖추어져서 康命徽가 한번에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어의로 還陞하고자 합니다.	1원 還陞
7	1771.12.17	姑降하여 입직하여 하는 예에 따라 어의 중 金光顯을 姑降하여 입직하는 전례를 따르겠습니다.	1원
8	1773.7.7	姑降하여 입직하는 예에 따라 어의 중 慶成運·朴明達을 전례에 따라 姑降하여 내의청에 입직시키겠습니다.	2원
9	1773.7.25.	姑降한 내의 慶成運·朴明達을 어의로 還陞시키겠습니다.	2원 還陞
10	1775.8.15	姑降하여 입직하는 예에 따라 어의 중 崔尙圭·金相祐를 전례에 따라 姑降하여 내의청에 입직시키겠습니다.	2원
11	1775.10.4	姑降하여 입직하는 예에 따라 어의 중 方泰衍을 전례에 따라 姑降하여 내의 원에 입직시키겠습니다.	1원
12	1775(영조51).윤10.28.	본원의 어의 崔尙圭·金相祐는 일찍이 내의 번차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姑降하여 入直시켰습니다. 이제 한번 당직 인원이 여유로우므로 崔尙圭·金相祐를 예에 따라 還陞하고자 합니다.	2원 還陞
13	1825(순조25).10.22.	어의 중 金珪·安櫛을 姑降하여 내의원내 입직시키겠습니다.	2원
14	1826.1.20.	姑降한 내의 金珪·安櫛을 어의로 還陞하겠습니다.	2원 還陞
15	1827.윤5.17	어의 金珪·安櫛·秦慶煥를 姑降하여 내의원내 입직시키겠습니다.	3원
16	1827.8.5.	姑降한 내의 金珪·安櫛·秦慶煥을 어의로 還陞하겠습니다.	3원 還陞
17	1858(철종9).1.4.	姑降한 내의 鄭在晩·洪顯普를 어의로 還陞하겠습니다.	2원 還陞
18	1858.10.29.	姑降한 내의 秦喜鳳·金鴻男·李敬仁·鄭在晩·洪顯普를 어의로 還陞하겠습니다.	5원 還陞

(4) 減下

내의원 의관의 감하는 다른 동서반 관직자들의 체차와 유사하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내의원의 경우 체차는 도제조와 같이 문관의 겸직인 경우에만 언급되고⁴⁴⁾ 의관의 경우는 ‘減下’란 용어가 사용된다. 문관겸직의 경우 ‘감하’란 용어가 사용된 사례도 있다.⁴⁵⁾

내의원 의관이 일반적인 감하는 3가지이다. 첫째 다른 관직으로의 천전이다. 동반직이나 수령직에 체수되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이다. 둘째 아버지의喪을 당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身病으로 인한 경우이다.

직무 관련된 감하는 대표적인 것이 관례적인 상전의 반대의 경우이다. 즉 의약청과 산실청 개설 이후 치료 대상이 예후가 좋지 못하면 참여하였던 의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이다. 또한 본연의 임무에 관련된 사안이 있다. 예를 들어 상무장무관은 내의원에서 소용되는 약재의 출납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자리였다. 1833년의 『승정원일기』를 보면 내의원에서 인삼 관련하여 당시 상장무관 김유정이 감하되는 사례가 있다.⁴⁶⁾

물론 내의원의 당하의관은 체아직 의관이므로 도목에 의해 교체되었다. 원래 내의원은 전의감이나 혜민서의 경우처럼 양도목 취재에 의한 성적 결과 순서대로 직임을 맡지는

44) 『승정원일기』 현종 4년 10월 12일 기사. 숙종 6년 윤 8월 4일 기사.

45)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4월 24일 기사. “臣兼帶內醫院提調, 請命減下.”

46) 『승정원일기』 순조 33년 1월 14일 기사. “又以內醫院都提調·提調意啓曰, 本院藥色六朔傳掌之際, 江蔘稱剩, 數外夥多, 事極可疑, 故自本院查實, 則藥色書員崔興麟, 與宋應龍符同, 造蔘換出之狀, 一一自服. 莫重嘗藥之地, 有此無前變怪者, 萬萬驚悚. 崔興麟·宋應龍, 竝出付秋曹, 其造蔘之情節, 換出之數交, 到底盤覈, 依律定罪. 而人蔘出納, 卽上掌務官, 掌鑰舉行者, 則如不符同和應, 必無是理, 當該上掌務官金有鼎, 一體出付刑曹, 以爲頭面究覈之地. 而上掌務官金有鼎, 書員崔興麟·宋應龍, 竝爲先汰去.”

않았다. 『경국대전』을 보면 “50살 이하의 내의원 관원은 4 계절의 첫 번째 달에 提調가 3書を 추천의 방법으로 시험을 보여 차례를 매긴 다음에 임금에게 보고하고 이조에 공문을 보내 승급시키거나 강직시켰다. 처음 배치할 때에도 상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쳐서 뽑는다.”⁴⁷⁾라 하였다. 즉 양도목이 아니라 사도목에 의하여 직임을 맡았다. 이 규정은 『대전통편』 등에서도 그대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 규정과 달리 양도목정사로서 임명되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 1725년 6월의 기사를 보면 ‘춘하등 도목정사’와 ‘추동등 도목정사’⁴⁸⁾라는 표현이 나온다. 단 1례만 언급되어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의 임명이 일반적으로 양도목에 의한 것인지 사도목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經國大典註解 前集』을 보면 “체아아문의 전함관이 고과에서 中을 받으면 다음 시기의 포폄 전에는 사용되지 못한다.”⁴⁹⁾라 하였으므로 근무 고과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내의 신분 자체는 유지되었다. 전의감이나 혜민서의 의관이 취재 결과에 따라 아무런 직임을 맡지 못함과 다르다. 더구나 규정상으로도 내의원 의관은 동서반직 관직에서 체차되어 직이 없는 경우 원래의 직에 복직시키는 등의 혜택이 있었다. 전의감과 혜민서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며 별도의 都豫差를 두어 권원이 생기면 도예차를 그 자리에 임명하였다. 도예차는 醫司의 녹관, 審藥, 兩都月令醫, 統營救療官 다음의 취재 순위였다.⁵⁰⁾

조선후기에 내의원 의관과 같은 신분 보장은 다른 기술직 관청인 사역원에도 常仕堂上이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 그러나 사역원 상사당상의 입속과 감하에 있어 왕의 윤허는 필요하지 않았다. 반면 내의원의 입속과 감하에 있어 왕의 윤허가 필수였다. 이러한 차이는 내의원 의관에게 특별한 위상을 부여하였다.

III. 결론

본고를 통하여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의 직임과 인사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기존에 조사된 『경국대전』 등의 법전, 『내의원식례』 등의 내의원 관련 문헌을 통하여 내의 제도의 규정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법전 규정만 가지고는 내의원에서 그 규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해졌는가는 알기 어려웠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그 규정의 실제 운영, 제도의 변화상 및 원인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제 운영 및 규정에 나오지 않는 관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내의원 소속의 의관은 다른 기술직 관청의 관원과 달리 왕의 윤허를 받아 임명되고 체직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내의원 의관들의 신분을 다른 기술직 관원과 구분 짓게 만드는 시작점이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도출되었다.

첫째, 내의원 의관은 원래 정원이 없다가 점차 정원 규정이 생겨났다. 의약동참의와 내침의는 정원이 없었으나, 처음 10원으로 정해지고, 이후 영조조에 12원으로 확대되었다. 원래 정원이 없던 당상의관인 어의는 1864년에 처음으로 정원이 7원이 되었다. 이는 의약동참의 정원 신설과 다소 다른 성격인데 재정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둘째, ‘겸어의’와 ‘가차내의’는 내의 정원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의 ‘겸어의’는 어의의 정원을 확대하여 내의원 의관에게 자리를 보장해주었다. 겸어이는 당하관으로 내의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당상관인 어의의 지위를 누렸다. 정조 이후의 ‘가차내의’는 법전의 규정을 따르면서도 정원을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법전은 12원을 정원으로 하였으나, 가차내의를 뒀으로서 별도의 정원이 추가되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내의원 의관의 관례적인 승진은 확대되다가 19세기 중반 이후 엄격해졌는데, 그 시기 특별승진은 이전 시기보다 빈번해졌다. 30개월이 지나면 6품직에 임명되는 규정은 의약동참은 1686년에, 내침의는 1718년에 신설되면서 관례적인 승진의 기회가 늘었다. 내의의 경우 장무관이 가자되는 규정은 철종 이후로 3차례 이후 가자로 강화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특별 승진은 빈번했는데 官秩이 높은 의관이 이전 시기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首醫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관보다 높은 官秩이 필요했기 이를 위한 특별 승진이 빈번해졌다.

47) 『經國大典 禮典』 취재조. “內醫院官員[五十歲以下]. 四孟月, 提調抽試三書, 定等第, 啓移吏曹, 陞降授職.[初入屬時, 亦依上試取].

48) 『승정원일기』 영조 1년 6월 25일 기사. “又啓曰, 因內醫院薦狀牒呈, 昨日政, 李萬祥參奉啓下矣. 今聞院官尹興大, 方帶春夏等參奉遞兒, 李萬祥則乃是秋冬等當付者, 而本院徑送薦狀, 以致差誤, 既已覺得之後, 不可仍置, 李萬祥姑爲改差, 以待秋等祿都日政事, 更爲下批, 何如? 傳曰, 允.”

49) 『經國大典註解 前集 吏典』 褒貶조. “有遞兒衙門, 前衙官中者, 後等褒貶前勿敘. 有遞兒衙門即指內醫院·觀象監·典醫監·司譯院·惠民署, 一年兩都日者而言.”

50) 『惠局志·考課』 祿試조. 『해국지』는 1719년 처음 저술되고, 1778년에 증보된 혜민서의 관청지이다.

결론적으로 조선후기 내의 제도는 그들만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해당 정원을 늘리고 승진을 제도와 관례를 통하여 보장하였으며, 18세기 중반 이후로 약간의 규정상의 제약을 받기도 하였으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이는 내의원 관련 문헌의 규정에서 뿐 아니라 『승정원일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내의원 의관은 다른 기술직 관원들과 비교하여 승진과 신분 등에서 우월성을 누렸다.

본 논문은 대상으로 하는 시기가 광범위하여 일반론적인 논지 전개가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법전 규정의 실제 적용과 규정에 없는 관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향후 내의원 내 특정 직임이나 특정 시기 내의원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소중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위빙. 『혜국지』. 필사본. 1874(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2. 경석현. 「조선 정조대 관상감 겸교수 제도의 정비와 그 의미」. 한국사연구. 2021;193:221-260.
3.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담구당. 1966:196-199, 234-235.
4. 박훈평. 「의관의 원종공신 녹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2):85-98.
5. 박훈평. 「내의원식례의 저술 시기와 내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39-51.
6. 박훈평. 「조선후기 의약 관련 왕실 의례 연구 - 탁지오례고를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23-30.
7. 손홍렬.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서울:수서원. 1988:263-266.
8. 신유아. 「조선시대 내의원의 기능과 의관의 지위」. 역사와 실학. 2018;65:149-191.
9. 우현정. 「조선후기 역관 양성의 실제」. 교육사학연구. 2021;31(1):67-97.
10. 이규근. 「조선시대 의료기구와 의관」. 동방학지. 1999;104:95-161.
11. 이우성 편. 『창진집 외』. 서울:아세아문화사. 1997.
12. 김재로(1746). 「續大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12.31.)
13. 김지남(1881). 「通文館志」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2.1.10.)
14. 김치인(1784). 「大典通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12.31.)
15. 내의원(1810). 「內醫院式例」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2.1.10.)
16. 명종(1555). 「經國大典註解」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2.1.10.)
17. 승정원(1623-1894).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2022.1.10.)
18. 최항(1485). 「經國大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2.1.10.)
19. 호조(1835-1849). 「度支五禮考」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2022.1.10.)
20. 홍종서(1867). 「六典條例」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2.1.10.)